

제 11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_주야간보호

제44조 (계약 목적)

-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.
- ② 센터와 수급자, 그리고 보호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이용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.

제45조 (계약기간)

-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. 단,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.
- ② 계약기간은 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,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고지하는 것으로 갈음한다.
- ③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.

제46조 (이용계약에 관한 사항)

- ① 이용계약은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,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- ②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, 계약당사자(센터주체, 서비스이용자, 서비스 보호자), 인적사항, 계약기간, 계약의 변경, 계약의 해지, 급여비용 청구 및 수납, 배상책임, 이용규정, 개인정보보호의무,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1부는 계약자,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한다.
-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수급자 본인이 치매,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.

제47조 (급여비용/이용료)

-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 규정에 의한다.
-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(15%) 본인부담으로 한다. 단,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

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.

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감경(6%, 9%),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(0%)이다.

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,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.

단, 주·야간보호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과 1일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

⑤ 본 센터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정부로부터 지역에 할당된 기금을 송산지역주민들이 나누어 갖지 않고 송산사회복지시설 건립(마실노인복지센터)을 통해 운영되어지는 송산면민 모두가 지분을 갖고 있다. 따라서 이용자 중 송산면 거주자의 비급여 부분 중 식비의 50%이내에서 감면한 금액으로 수납 할 수 있다. 단, 센터의 사정에 따라 시행을 연기 할 수 있다.

제48조 (급여비용 청구)

①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.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.

②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.

③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(한도액)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.

④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.

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.

⑥ 급여계약 후 수급자 본인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날의 급여비용(이하 "미 이용일 급여비용" 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.

1. 주·야간보호 급여를 월 15일 이상 이용하고자 계약을 체결하고, 급여가 개시되는 해당 월 전월 말일까지 공단에 급여계약통보가 된 경우에 한해 산정한다.

2. 공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한 평일(월~금요일) 기준으로 월 5일의 범위 안에서 급여계약통보서의 이용 예정 급여비용의 50%를 산정한다.

제49조 (계약자, 당사자의 의무)

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

약서를 체결한다.

① 서비스제공자(이하 “제공자”이라 칭함)의 의무

1. 서비스이용자(이하 “이용자”이라 칭함)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
2. “제공자”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(단,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)

② 서비스이용자 의무

1. 월 이용료 납부 의무
2.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
3.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

③ 보호자(이하 “보호자”이라 칭함)의 의무

1.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
2.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
3.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

제50조 (신원인수인의 권리·의무)

인수 권리 및 의무: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,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.

-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.
- ②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권리
- ③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.
- ④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.
- ⑤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.

제51조 (계약의 해제)

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
2.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
3.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‘보호자’, ‘센터’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‘보호자’가 인정할 경우
4.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,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

을 경우,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

5.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성서비스 제공에
막대한 지장을 줄 때

6.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

7.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,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

8. 보호자 및 당사자의 폭언, 폭력으로 인해 계약이행이 어려울 경우

9.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